

##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심 사 보 고

#### 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1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1. 26
- 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1. 26

#### 2. 제안설명

가. 제안설명 : 농산과장 양 정 열

나. 제안사유

-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가 농지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됨에 따라 조례중 농지취득자격의 농지위원 확인 절차를 삭제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농지취득자격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 조항 삭제 (안제8조)

#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임근성)

- 2002. 12. 31일 대통령령 제17869호로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 확인 및 제9조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와 관련된 제8조의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.

#### 4. 질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#### 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#### 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##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위원의 업무수행 결과 보고)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 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 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</p>	<p>&lt;삭제&gt;</p>